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26.01.01.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우리공사가 집행하는 공사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삭 제 》

2. 《 삭 제 》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1-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실적제한 경쟁입찰의 시공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실적 외에 다른 시공실적으로 대체할 경우와 시공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 통보한 날(이하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이라 한다)까지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실적은 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제출실적의 심사기준은 [별지 1]에 의한다.

④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

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가 관련협회의 통신망(인터넷포함)등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그 자료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제5호 마호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2.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상종합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

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 (1) 심사항목 가~아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지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지 최초결산서로 본다.
- (4)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지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 (1) 우리공사의 요구로 관련협회에서 문서 등으로 통보한 경우
-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최근의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발표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를 근거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 목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

성한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를 감점처리하며, '라'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의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아.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0점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구성원은 0점으로 평가한다.
  - 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등은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는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해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우리공사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신인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분야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 1. 신인도 분야의 감점항목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 2. 제1호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 등”이라 한다)을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사고사망만인을 평가

가. 사고사망만인을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4.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5.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우수업체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6.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 평가요소 ‘당해 계약서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⑥ 가산점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3]부터 [별표 1-7]까지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1-3], [별표 1-4]를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⑧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3] 내지 [별표 1-7]을 따른다.
1.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

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제7항 및 제10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⑨ <삭 제>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3] 내지 [별표 1-7]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1-3] 내지 [별표 1-4]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1-3] 내지 [별표 1-4]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 3 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가목·나목 단서, 제2조제10항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제2조제4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라. 기술능력 및 시공경험(별표1-3, 별표1-4의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

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삭 제>

- (3) (1)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10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

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나목 단서, 제2조제10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1) 내지 (5)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산평가 세부내용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하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

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1)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 2)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 3)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 4)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 5)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 6)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 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수행능력평가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 점수에 곱하여 평가한다.

- 1)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12.5%이상 20%미만인 경우 : 4%
- 2)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6.5%
- 3)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25% 이상인 경우 : 8%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7항제1호가목·나목 단서·다목, 제2조제10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 4 조(적격심사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3순위까지 적격심사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포기각서(공문)를 징구해야 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정한다.

③ 적격심사서류 접수결과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우리공사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당해공사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의2(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 5 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6 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7 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② 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장설명시 보충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우리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허위의 사실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⑥ 입찰자는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적격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기 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부문에 대한 평가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8년 3월 5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1년 1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통보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 발주 도급공사 재해발생업체에 대한 평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통보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 발주 도급공사 재해발생업체에 대한 평가는 2014년 12월 17일 개정부칙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통보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 발주 도급공사 재해발생업체에 대한 평가는 2014년 12월 17일 개정부칙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과규정) [별표1-2] 1-6.신인도평가 다. 15) 및 [별표1-3] 1-3.신인도평가 다. 15) 에 따른 감점은 이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 받은 분부터 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5항 3호 가. 의 규정 및 [별표 3] 신인도 평가 중 다. 10) 관련 평가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6 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및 [별표 1-4] 1-2. 경영상태의 '나' 평가, [별표 1-3]부터 [별표 1-7]의 '2. 입찰가격 평가'는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 내지 [별표 1-7] 2. 입찰가격평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별표 1-3] 내지 [별표 1-7]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별표 1-1] 《삭제》

[별표 1-2] 《삭제》

[별표 1-3]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수행 능력	1.1시공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li> <li>·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li> <li>· &lt;삭제&gt;</li> <li>·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li> </ul>	15
	1.2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5
	1.3 신인도		+2 ~ -4
	소 계		30
2. 입찰가격			50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계			100

# 1. 수행능력 평가(배점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1-1. 시공경험(배점15점)

### 1-1.1 공사실적

#### 가.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공사실적	공사규모	A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5
		B : 125%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3.2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1.6

#### 나. 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2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6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9.3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6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9.3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7.9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이 각각 동일실적, 유사실적일 경우에는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가 큰 건 1건만 인정한다.

1-1.2 <삭제>

1-1.3 기술자 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기술자보유현황	회사보유 기술 인력수	A : 5인 이상	3.0
		B : 4인 이상	2.0
		C : 3인 이상	1.0

주) 기술자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며, 분야 및 기술등급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총인원수를 평가한다

1-2 경영상태(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33	A. 50%미만	7.33
			B. 75%미만	6.57
			C. 100%미만	5.83
			D. 125%미만	5.06
			E. 125%이상	4.3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0	A.150%이상	7.00
			B.120%이상	6.30
			C.100%이상	5.56
			D. 70%이상	4.66
			E. 70%미만	3.94
다. 영업기간		0.67	5년이상	0.67
			5년미만 3년이상	0.60
			3년미만	0.50

※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복합 시설 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 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	1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2.9	12.9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3. 신인도평가(배점 : +2 ~ -4점)

1) 일반신인도(배점 :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사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7)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우수 B : 양호	2 1
	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 처분	9) <삭제>			
	10)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삭제>			
	1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 건
	1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15) 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0.9 0.8 0.7 0.6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8)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고용개선 관련	19) 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 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 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 하는 비율)	+2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 <삭 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관련	2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4)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협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지원	25)저출생 대응	+2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 ~ +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3
			- 사망자 2명	-2
			- 사망자 1명	-1
나.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0.8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6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0.4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2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1
			B. ISO-4500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주)

가. 신인도는 공사 유형에 따라 아래 나목 다목과 같이 평가하되, 각 유형의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종합공사 평가방법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단, 토목, 토건, 건축공사업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2. 신인도 점수는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 와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의 합으로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최근 1년간 우리공사가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취득점수에서 감점하며,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가"목의 평가요소 및 평점을 부여한다.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삭제>
8.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8-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 8-2) 적격심사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 8-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 <삭제>
10.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10-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1.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

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1-1) 14)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우리공사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12.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은 내용을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인증 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동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지급시에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 · 장비업자 대

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수요기관에서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4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 13-4) 심사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동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13-5) 낙찰자가 13-4)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심사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적격심사대상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Rightarrow 0.88(\text{미사용비율}) \times 1\text{점(가점)} \times 2(2\text{배 감점}) = 1.76 \rightarrow \Delta 1.7\text{점}$ )
- 13-7) 13-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3-3) 내지 13-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 13-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 등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적격심사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

산하여 평가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3-9)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14. '마'목 20)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5. '마'목 21)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15-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text{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 + \text{기간제 근로자수} + \text{소속 외 근로자수}) / (\text{소속근로자수} + \text{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5-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 16. <삭 제>

17. '바'목의 23) 과 24) 의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4)로 평가한다.

17-1) 23)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7-2) 23)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7-3) '바' 목의 24)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7-4) 24) A. 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7-5) 24) A. 의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같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7-6) 24) A.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7) 24) B. 의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8) 24) B. 의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8. '사' 목의 25)의 평가는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관련기관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증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조달청에게 마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방법(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로 평가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4)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전문공사에만 해당)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7)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 건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다. 건설재해 제재처분 및	8)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9) 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일자리 창출관련	10)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협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마. <삭 제>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 ~ +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중대재해 (0 ~ -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료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3
			- 사망자 2명	-2
			- 사망자 1명	-1
나. 재해예방 (0 ~ +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0.8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6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0.4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2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A. KOSHA-MS	+1
			B. ISO-4500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도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배점 50점)

$$o 50-2 \times \left|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숫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배점 10점)

- <별표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배점 10점)

- <별표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한다.

[별표 1-4]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50억미만 3억원이상)

구 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1.수행능력	1.1 시공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li> <li>·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li> <li>· &lt;삭제&gt;</li> <li>·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 분야)의 공사 실적</li> <li>·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li> </ul>	15
	1.2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5
	1.3 신인도		-9 ~ +6
	소계		30
2. 입찰가격			7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 1. 수행능력 평가(배점 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1-1. 시공경험(배점15점)

### 1-1.1 공사실적

#### 가-1.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공사실적	공사규모	A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5
		B : 125%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3.2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1.6

-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 가-2.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이외의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비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공사실적 금액	$\text{점수} = \text{실적계수} \times 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text{* 실적계수} = \frac{\text{당해공사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text{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

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 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2.0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6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9.3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6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9.3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7.9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이 각각 동일실적, 유사실적일 경우에는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가 큰 건 1건만 인정한다.

1-1.2 <삭제>

1-1.3 기술자 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기술자보유현황	회사보유 기술 인력수	A : 3인 이상	3.0
		B : 2인 이상	2.0
		C : 1인 이상	1.0

주) 기술자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며, 분야 및 기술등급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총인원수를 평가한다.

1-2 경영상태(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A. 100%미만	7.0
			B. 75%미만	B. 130%미만	6.2
			C. 100%미만	C. 160%미만	5.4
			D. 125%미만	D. 190%미만	4.6
			E. 125%이상	E. 190%이상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A. 100%이상	7.0
			B. 120%이상	B. 90%이상	6.2
			C. 100%이상	C. 80%이상	5.4
			D. 70%이상	D. 70%이상	4.6
			E. 70%미만	E. 70%미만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1.0
			3년미만 1년이상		0.9
			1년미만		0.8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 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4-1.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일반건설공사업 이외의 업체평균비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당해업종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6.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7. 영업기간의 평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복합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가. 새로 등록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나. 새로 등록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8.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9.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10.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	1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2.9	12.9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3. 신인도(배점 : -9 ~ +6점)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건설재해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삭 제>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나. 일자리 창출기업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 ~ +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8
			- 사망자 2명	-6
			- 사망자 1명	-2
나.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2.0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1.6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2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0.8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4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주)

가. 신인도는 공사 유형에 따라 아래 나목 다목과 같이 평가하되, 각 유형의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종합공사 평가방법

1.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1-3]의 '1-3. 신인도평가'의 방법에 따른다.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방법( 1) 일반신인도(배점: -1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로 평가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 ~ +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2)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전문공사에만 해당)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나. 일자리 창출기업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다. <삭 제>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 ~ +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료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8
			- 사망자 2명	-6
			- 사망자 1명	-2
나.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2.0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1.6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2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0.8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4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2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입찰가격 평가(배점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circ 70 - 4 \times \left|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circ 70 - 20 \times \left|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3. <삭제>

[별표 1-5]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수행 능력	1.1 시공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li> <li>·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li> <li>·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 실적</li> </ul>	10
	1.2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0
	1.3 신인도		-9 ~ +6
	소 계		20
2. 입찰가격			8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 1. 수행능력 평가(배점20점)

- 시공경험,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1.1. 시공경험(배점10점)

-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규모	A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
		B : 125%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9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8

-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이외의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비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공사실적 금액	$\text{점수} = \text{실적계수} \times 10.0$ (단, 평점상한은 10.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2 $\times$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2을 적용한다.
-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4.1 다만,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 5.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2 제2조제9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공사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3 제2조제9항제1호다목 단서·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

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3.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3.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5.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5.3.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5.3.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5.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2 경영상태(10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한다.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 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4-1.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일반건설공사업 이외의 업체평균비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당해업종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6.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8.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9	9.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6	9.7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8.6	8.6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 1-3. 신인도(배점 : -9 ~ +6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입찰가격 평가(배점 80점)

o  $80 - 20 \times \left|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 \quad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숫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3. <삭제>

[별표 1-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수행 능력	1.1 시공 경험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5
	1.2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1.3 신인도		-9 ~ +6
	소 계		10
2. 입찰가격			9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 1. 수행능력 (배점 10점)

## 1-1. 시공경험(5점)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금액)	<p>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p> <p>*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 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 가격기초금액×1/2)</p>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 축,전문업종별, 전기, 정보 통신 등) 또는 주력업무분 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1-2 경영상태(배점 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3.0
			B. 130%미만	2.7
			C. 160%미만	2.4
			D. 190%미만	2.1
			E. 190%이상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2	A. 100%이상	2.0
			B. 90%이상	1.8
			C. 80%이상	1.6
			D. 70%이상	1.4
			E. 70%미만	1.2

####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 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4-1.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일반건설공사업 이외의 업체평균비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당해업종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6.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8.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	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	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9	4.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8	4.9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4.3	4.3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 1-3. 신인도(배점 : -9 ~ +6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입찰가격평가(90점)

○  $90 - 20 \times \left|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3. <삭제>

[별표 1-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8천만원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수행 능력	1.1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0
	1.2 특별신인도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1.3 신인도		-9 ~ +6
	소 계		10
2. 입찰가격			9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 (10점)

## 1-1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 주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3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9	9.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6	9.7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8.6	8.6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 특별신인도 가점(2점)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1-3. 신인도(배점 : -9 ~ +6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times \left|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3. <삭제>

## [별표 2] 자재 및 인력조달의 적정성 평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

###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frac{\text{직접노무비} + \text{간접노무비}}{\text{입찰금액 (부가세포함)}} \times 100\%$

○ 배점 :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수	1	2	1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수	0.5	1	0.5

-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율,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4. 난이도계수는 공고상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로 한다.

[별표 3] 하도급관리계획서

- 아래의 하도급계획서를 대상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 하도급계획서

공고번호 : 제 -

공사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 공사	1식			%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 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 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9장 하도급관리에 의거,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 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을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 (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등급별 평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5	주2)에 따라 평가
	B:77%이상 ~80%미만	6	
	C:80%이상 ~82%미만	7	
	D:82%이상	8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A:30%이상	2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B:20%이상	1	
계		10	

※주 :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우리공사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 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우리공사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별표 5]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평가

### 1. 적용범위

제3조제2항의 평가에 적용한다.

### 2. 지역업체 가산평가 방법

- 가산점은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3. 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4. 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으로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text{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frac{\text{지역소재일}}{3650}$$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3.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중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 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4.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 [별지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 1. 적용범위

- 1) 제2조제3항의 평가에 적용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에 의한다.
- 2)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 3)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4) 하도급공사 : 찬 ‘1)’ 내지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3조에 따른다.

####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 1)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및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 3) 시공실적증명서에 전체공사 시공금액(준공 및 사급), 전체 실적 공종과 적격심사 대상공종의 시공규모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도면 및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 4. 시공실적 심사기준

#####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동일 및 유사 공사의 준공실적  
(단일공사 실적1건)

- 다수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공사 실적1건만 인정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 2)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규모(금액) 인정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 실적규모(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 3)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며, 적합할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동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동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또는 하도급내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국내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해외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실적을 인정한다.

나)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2020.12.31.(민간공사는 2021.12.31. 이전)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마)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바)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 사) 하수급자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5) 업종별 실적인정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6)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양식 1>

### 적격심사 신청서

○ 입찰명 :

○ 입찰일시 : 201 .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공사 심사기준 제6조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절취선).....(인).....

### 접수증

1. 입찰명 :

2. 제출자 :

3. 첨부서류 확인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시공실적증명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5.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상기와 동일하게 위 건 공사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장

(인)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입찰명		입찰일시	
-----	--	------	--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사명						
② 대표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그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공비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 일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⑨유 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⑩ 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⑪ 경영상태 평가						
⑫ 시공여유율						
⑬ 최근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 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소					
	작성자					

- 주)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양식 3 >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

1. 심사대상공사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시	
공사명	
공사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계		100	

<별첨양식 4>

## 공사 수행 실적증명서

공 사 명		장기계속 공사여부	
수 요 기 관			
신 청 인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공사 는총공사기준 작성	계약 일자	도급금액	₩
	착공 일자	준공금액	₩
	준공 일자		
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 확장공사 ( ) 개 ·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자 및 내용 * 주1)			
하도급자 및 내용 * 주2)			
실적공사내용 * 주3)	○ 공사종류 및 내용 (건설업종 및 내용)  ○ 공사 시공 규모 및 용량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 주1) 해당사항이 있을시 공동도급의 이행방식, 비율, 공사내용 등을 구분 작성하고 별첨하여 제출 바람.
- \* 주2) 해당사항이 있을시 하도급자의 면허, 공사내용 등을 구분 작성하고 별첨하여 제출바람.
- \* 주3) 당해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공사내용 기록으로 공사종류, 규격, 규모 등을 구분 작성하여 제출바람.

<별첨양식 5>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훈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 목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 (학력·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합 계 (학력·경력+자격기술자)				
	기계·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 (학력·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합 계 (학력·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 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훈 격법외의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합계 (학력·경력+자격기술자)				
<p>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 . . . . .</p> <p>※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 . 주소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회사명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등록번호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 . . . . . (인)</p> <p>(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p>					

※ 주 :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별첨양식 5-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합계	비고
	회사명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부
합 계								

<별첨양식 6>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년 월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담당업무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년 월	
<p>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1 . . . . . 주 소 :</p> <p>※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 . 주 소 :</p> <p>회사명 :</p> <p>대표자 : (인)</p>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 1)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경력기술자 평가의 동일 및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7> <삭제>

<별첨양식 8>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발급번호	
<b>건설(또는 환경)신기술 개발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b>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b>■ 신기술 개발현황</b>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b>■ 활용실적</b>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b>■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b>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자발적 활용실적							
소계					0건	00	
<p>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b> (직인)</p>							

<별첨양식 9>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우리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